

양계협 공고 제 2008-1-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153호, 2008.12)에 의거 종계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9.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제 1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 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종 계	0105-11-1000 0105-94-1000	닭(185g이하/종계) 닭(번식용)

제 2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대상 물량)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제 4조(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①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은 종계양허관세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양허관세추천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내에 둔다.

제 6조(수입신고) 종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계가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본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제 5조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8조(수입신고필증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 중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 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사후관리)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계통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08-1-1호(2008.1)는 이를 폐지한다.

양계협 공고 제 2008-1-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153호, 2008.12)에 의거 조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9.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 요령

제 1조(양허관세 추천품목 등) 양허관세적용 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조 란	0408-99-1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제 2조(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 3조(양허관세 추천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1. 추천 받은 물량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통관 완료
2.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3. 원산지표시 이행
4. 수입 및 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4조(제재사항) 수입자가 제 3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양허관세추천 무효화
2. 향후 3년 이내 양허관세추천 제한

제 5조(양허관세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등)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하증권) 사본 1부.
4. INVOICE(송품장) 사본 1부.

제 6조(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품목의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익월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08-1-2호(2008.1)는 이를 폐지한다.